

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

1 기본 현황

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지방재정법 제32조의3,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~ 제1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		
사업비 (당해년도)	99,400천원	(국비)	(사비)99,4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국비)	(기타)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기획조정실	재정균형발전담당 관	윤재삼 2133-6860	이상화 2133-6853	안정현 2133-6854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8예산액 (A)	2019예산액 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-) 109,400	(x-) 99,400	(x-) △10,000	(x-) △9
사무관리비	(x-) 95,400	(x-) 95,400	(x-) 0	(x-) 0
시책추진업무추진 비	(x-) 4,000	(x-) 4,000	(x-) 0	(x-) 0
기타보상금	(x-) 10,000	(x-) 0	(x-) △10,000	(x-) △100

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9년 예산내역		
사무관리비	○ 참석수당	=	27,000천원
	12명*150,000원*15회		
	○ 지방보조금 책자 자료 등 인쇄	=	45,000천원
	45,000,000원		
	○ 검토수당	=	18,000천원
12명*100,000원*15회			
○ 속기사 수당 등	=	5,400천원	
5,400,000원			
시책추진업무추진비	○ 시책추진업무추진비	=	4,000천원
	4,000,000원		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지방보조금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 지방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재정 투명성 확보

□ 사업근거

- 지방재정법 제32조의3(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)
-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 ~ 18조

□ 사업내용

- 대 상 : 지방보조금 예산편성, 성과평가, 자원분담, 보조사업 유지여부 등
- 사업내용 : 지방보조사업의 적정성, 타당성, 재정지출의 효율성 등 심사
- 사업기간 : 2019.1 ~ 계속
- 총사업비 : 99,400천원

□ 추진경위

-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문 신설(2014. 5)
-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(2015. 5)
-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(2015. 5)

□ 2019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99,400	

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	2019.01~2019.12	99,400	연 15회 개최 예정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6년도	○ 총5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
2017년도	○ 총7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
2018년도	○ 총8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('18.10월 기준)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지방보조금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구조를 개선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6	(x-) 16,800	(x-) 0	(x-) 0	(x-) 16,800	(x-) 15,289	(x-) 0	(x-) 1,511
2017	(x-) 36,800	(x-) 0	(x-) 0	(x-) 36,800	(x-) 36,768	(x-) 0	(x-) 32